



HYUNDAI
FOREIGN SCHOOL

현 대 외 국 인 학 교
학 칙

학 칙

제 1 장 총칙

제 2 장 입학자격 및 기타 규정

제 3 장 교육과정

제 4 장 학급 편제 및 학생정원

제 5 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연간 수업일수 및 휴교일

제 6 장 학교운영

제 7 장 교원 및 직원

제 8 장 입학금 및 수업료, 기타 비용 징수

제 9 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부 칙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교는 현대외국인학교 (이하, 학교라 칭함) 라 명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교는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01(화정동, 울산과학대학 동부캠퍼스)에 소재지를 둔다.

제 3 조 (목적) 본교는 울산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녀들에게 국제학교위원회 (CIS: Council of International Schools) 가 정하는 학습지도 요령에 준하여 유아 및 초,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입학자격 및 기타 규정

제 4 조 (입학)

1.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
 - 2)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 (초/중등부에 한함)
2. 본교 입학 전 학부모는 정원 확인을 위해 미리 본교와 연락을 취해야 한다.
3. 최소한 입학 1개월 전에 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입학허가를 득하고 입학자격에 따라 이전 학교의 생활기록과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건강진단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특이사항 등을 기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본교는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모집 절차를 진행하되, 제출서류 확인 및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면접 등을 통해 국적 및 해외거주기간에 대한 검증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제 5 조 (편입학 및 재입학) 학기 중 편입 또는 재입학을 신청할 시 특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제 6 조 (자퇴 및 퇴학) 자퇴의 경우 학부형은 학기 만료 1 개월 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 일정기간 이상 서면 통보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학교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또는 기타 심각한 사유가 있을 시, 학교장은 상임이사 및 이사회와 협의를 거쳐 퇴학을 결정할 수 있다.

제 7 조 (수료 및 졸업) 본교는 유아 및 초, 중등 교육기관으로서 학생이 재학 후 학교를 떠날 때 재학기간 동안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하고 그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

제 8 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은 학생의 학습진도에 따라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 9 조 (포상 및 징계)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징계는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 10 조 (전학 및 휴학) 전학 및 휴학의 경우 학부형은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에게 이 사실을 1 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담임교사 및 학교장은 이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한다.

제 11 조 (보건) 본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정기적인 청소/방역을 실시하고 항상 청결한 위생상태를 유지한다.

제 12 조 (출결기입 및 출석정지) 담임교사는 매일 학생들의 출결사항을 출석부에 기입하고 행정실에 보관해야 하며 전염병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 3 장 교육과정

제 13 조 (교육과정) 본교는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학교위원회 (CIS)가 정하는 교육규정 및 학습지도요령을 기초로 하여 교육목표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제 14 조 (교과 과목) 본교의 지도 교과 영역은 다음과 같다. 그 외에 관해서는 필요에 따라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1. 영어는 학교의 공통 언어이며 모든 학생은 학교 내의 학습활동에서 기본적으로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
2. 유치부: 기초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그림 그리기 및 유희활동
3. 초등부: 영어, 수학, 과학, 정보기술, 역사, 지리, 시각예술, 체육, 음악, 한국어 등 초등부의 기본 교과목은 동일하나 학급별 수업 방식과 난이도는 상이할 수 있다.
4. 중등부: 영어, 수학, 과학, 정보기술, 역사, 지리, 시각예술, 체육, 음악, 한국어를 포함한 제 2 외국어 등, 중등부의 기본 교과목은 동일하나 학급별 수업방식과 난이도는 상이할 수 있다.

제 15 조 (평가) 각 학급의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진도 및 성취도를 평가하고 학습진도 기록표를 작성/유지하며 매 학기마다 학부모 면담을 실시한다.

제 4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 16 조 (학급편제) 본교의 학급은 영국식 교육 시스템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복식 수업이 가능하다. 단, 학생수에 따라서 학급 수는 증감될 수 있다.

- | | | |
|--------|----------|---------------|
| 1. 유치부 | : FS1 | 3.5 세-4.5 세 |
| 2. 초등부 | : FS2 | 4.5 세-5.5 세 |
| | Year 1 | 5.5 세-6.5 세 |
| | Year 2 | 6.5 세-7.5 세 |
| | Year 3 | 7.5 세-8.5 세 |
| | Year 4 | 8.5 세-9.5 세 |
| | Year 5 | 9.5 세-10.5 세 |
| | Year 6 | 10.5 세-11.5 세 |
| 3. 중등부 | : Year 7 | 11.5 세-12.5 세 |
| | Year 8 | 12.5 세-13.5 세 |
| | Year 9 | 13.5 세-14.5 세 |

제 17 조 (학생정원)

1. 각 학급 당 입학정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의 비율이 높을 경우 학급 당 학생 정원은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2. 내국인 학생의 입학 비율은 학년별 학생 정원의 30% 이내로 한다.

제 5 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연간 수업일수 및 휴교일

제 18 조 (수업연한) 본교는 설립 목적상 영국의 교육과정에 따라 유치부 및 초, 중등부로 편성하여 수업연한은 각각 1년, 7년, 3년으로 한다.

제 19 조 (학년 및 학기) 학년은 영국식 교육체계에 의해 다음과 같이 3 학기제로 구성한다.

1. Term 1 (8 월 말 – 12 월 말)
2. Term 2 (1 월 초 – 3 월 말)
3. Term 3 (4 월 초 – 6 월 말)

제 20 조 (연간 수업일수) 연간 수업일수는 평균 180 일로 한다.

제 21 조 (휴교일) 학년 중 정기 휴교일은 다음과 같다.

1. 토요일과 일요일
2. 대한민국 국경일 중 학교가 지정한 날
3. 동계방학, 봄방학, 하계방학
4.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휴일
5. 학사일정은 학교장이 학년 초에 공시한다.

제 22 조 (임시휴교) 임시휴교는 다음과 같은 상황 발생시 학교장이 결정한다.

1. 등교 전에 이상기상 경보가 발령된 경우
2. 학교장이 학생의 보건 및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6 장 학교운영

제 23 조 (학교운영) 본교의 운영은 학교장 및 이사회가 주관한다.

제 24 조 (학교운영 주체) 본교의 운영 주체는 다음과 같다.

1. 교장 및 이사회를 대표하는 상임이사가 행정실의 지원을 받아 학교를 운영한다.

2. 상임이사는 학교 업무를 총괄하며, 학사 관련 업무를 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제 26 조에 기술된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을 제외한 일상의 학교 업무는 행정실이 학교장 및 상임이사의 재가를 받아 처리한다.

제 25 조 (이사회) 본교는 학교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 4 명
2. 교장은 채용 시 당연직 이사가 되며,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현대중공업의 총무팀, 재무분석팀, 자산개발팀의 장이 각각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한다.

제 26 조 (이사회의 역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권을 갖는다.

1. 학교의 예산·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장, 교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 27 조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역할)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이 학교를 대표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학교 교무, 학사 행정 전반을 총괄한다. 상임이사는 교장, 교사, 행정 직원의 임명, 채용, 해고 여부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결정을 이행한다.

제 28 조 (자문위원회 목적 및 구성) 학교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교장, 상임이사, 교원 대표 1 명, 사무직원 대표 1 명, 학부모 대표 2 명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 29 조 (자문위원회 규칙) 자문위원회의 운영 관련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자문위원회 규칙'을 제정한다.

제 30 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본교의 학생들은 자치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을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조직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실시한다.
2. 학생자치활동을 위하여 학교는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 7 장 교원 및 직원

제 31 조 (교원 및 직원) 본교는 다음과 같은 교원 및 직원을 둔다.
학교장 0 명, 교사 00 명, 보조교사 00 명, 직원 00 명.

제 32 조 (교원 및 직원의 복무) 교원 및 직원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항상 타의 모범이 되는 언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제 33 조 (교직원의 임명) 본교의 교직원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가 요구하는 수준의 학력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고용계약에 따라 그 임기가 결정된다.

1. 교원은 정규 대학을 졸업하고 유아교육 또는 초, 중등교육을 위한 교원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자격증 및 이와 동등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2. 직원은 행정·서무 및 관리, 청소 직원을 말한다.
3. 상임이사와 교장은 교직원 후보에 대한 철저한 자격 심사 후 이사회에 보고를 거쳐 교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4. 교원 및 직원의 해고 및 파면은 교원 및 직원이 본교의 정상적인 학교운영과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장과 상임이사가 협의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한다(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사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 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 8 장 수업료 및 입학금, 기타 비용 징수

제 34 조 (수업료 및 입학금) 본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한화로 공시하며 연간 3 회 분할하여 납입하도록 한다.

1. 입학금 : 신입생 입학 시 최초, 1 인 1 회에 한해서 부과하는 것으로서 입학금 납부와 동시에 6 개월간 입학자격을 유지한다. 입학금 납부 후 기본 교재가 지급된다.
2. 수업료 : 수업료는 학교 과정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 며 납기일 30 일 이전에 고지서가 발행된다. 기본적으로 학기 시작 전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35 조 (기타 비용징수) 현장학습, 단체복 추가구입 등 교육상 필요한 지출이나 학교가 지정한 재정 지출 항목이 아닐 경우, 학교장은 학부모회의 동의를 얻어 학생들에게 해당 비용을 징수한다.

제 36 조 (경비 운영) 본교 경비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임이사가 매월 경비운영 실적을 이사장에게 보고하며, 매 회계연도 전 경비집행 계획 및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경비집행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9 장 학교규칙의 개정

제 37 조 (학교규칙의 개정) 학교규칙의 개정은 학교장과 상임이사가 이사회와 협의를 통해 시행한다.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사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 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부 칙

1. 이 학칙은 2018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학칙은 2021 년 4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3. 이 학칙은 2021 년 9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4. 이 학칙은 2021 년 12 월 17 일부터 시행한다.
5. 이 학칙은 2022 년 12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6. 이 학칙은 2023 년 9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7. 이 학칙은 2024 년 2 월 2 일부터 시행한다.